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3월 30일

제 안 자 : 이기동 의원 외

□ 제안이유

- 토요휴무제 및 토요전일근무제 시행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본 조례의 개정과 직접 관련 없는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토요휴무제 및 토요전일근무제 시행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조문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를 삽입하고,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안 제15조의2 제1항)
- 교육감이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제18조 제1항)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하는 부칙 조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안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교육감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1.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여비조례”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한다.</p> <p>2. 제1조증 “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으로 한다.</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삭 제)</p>